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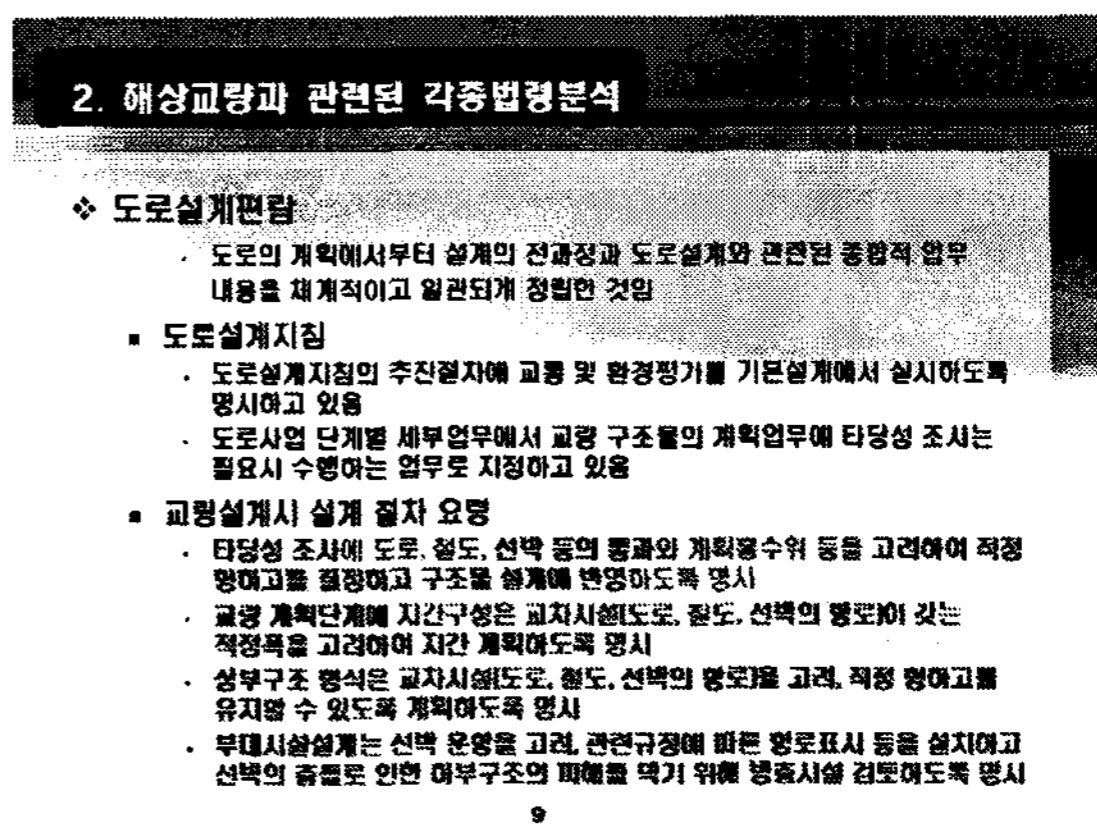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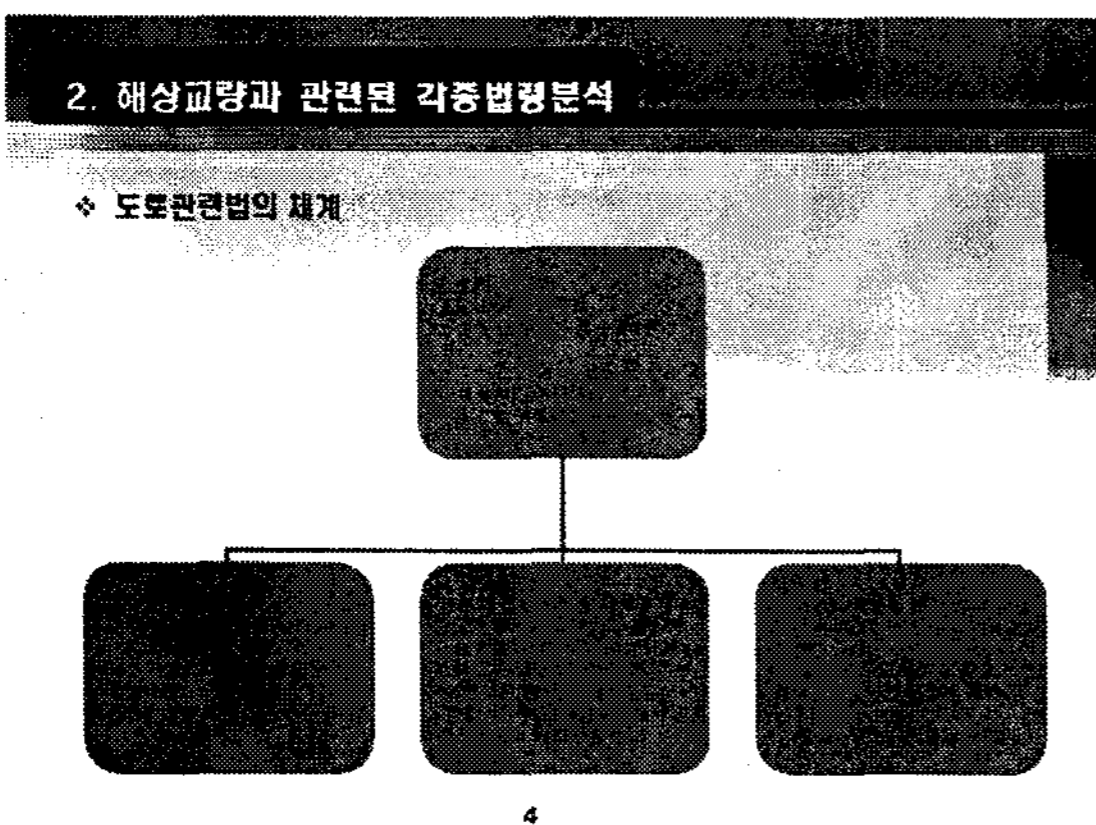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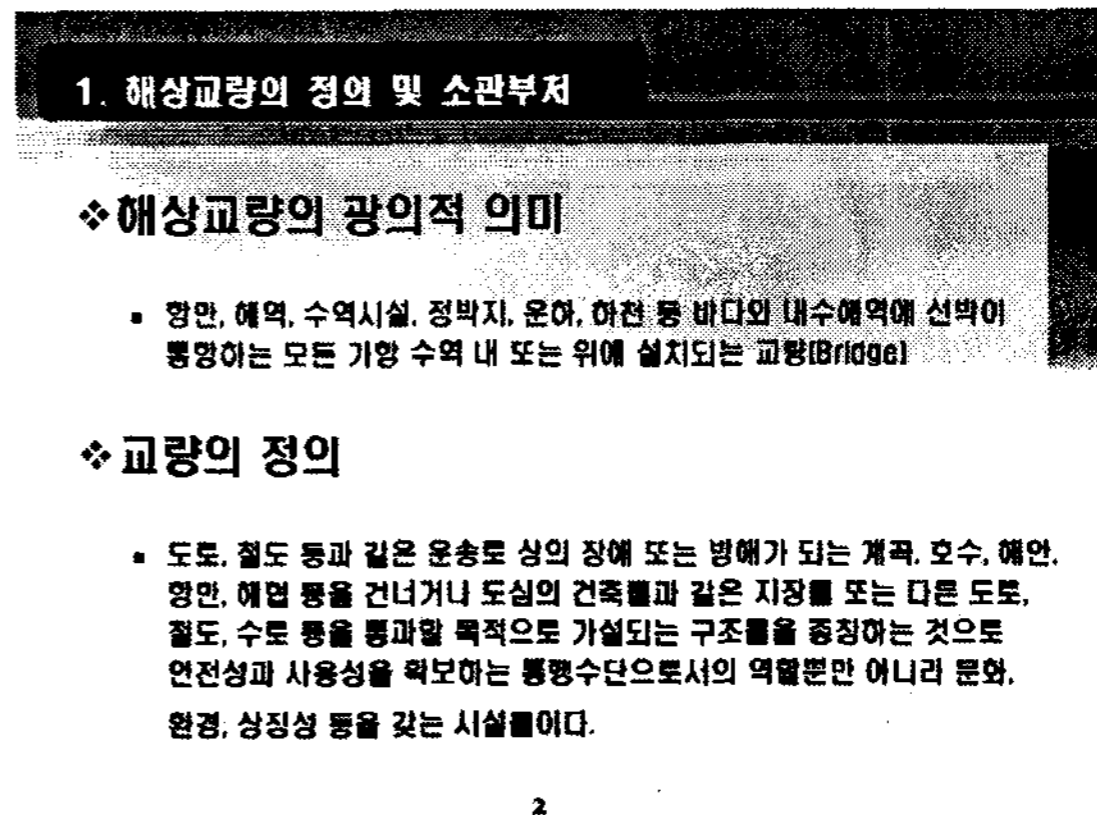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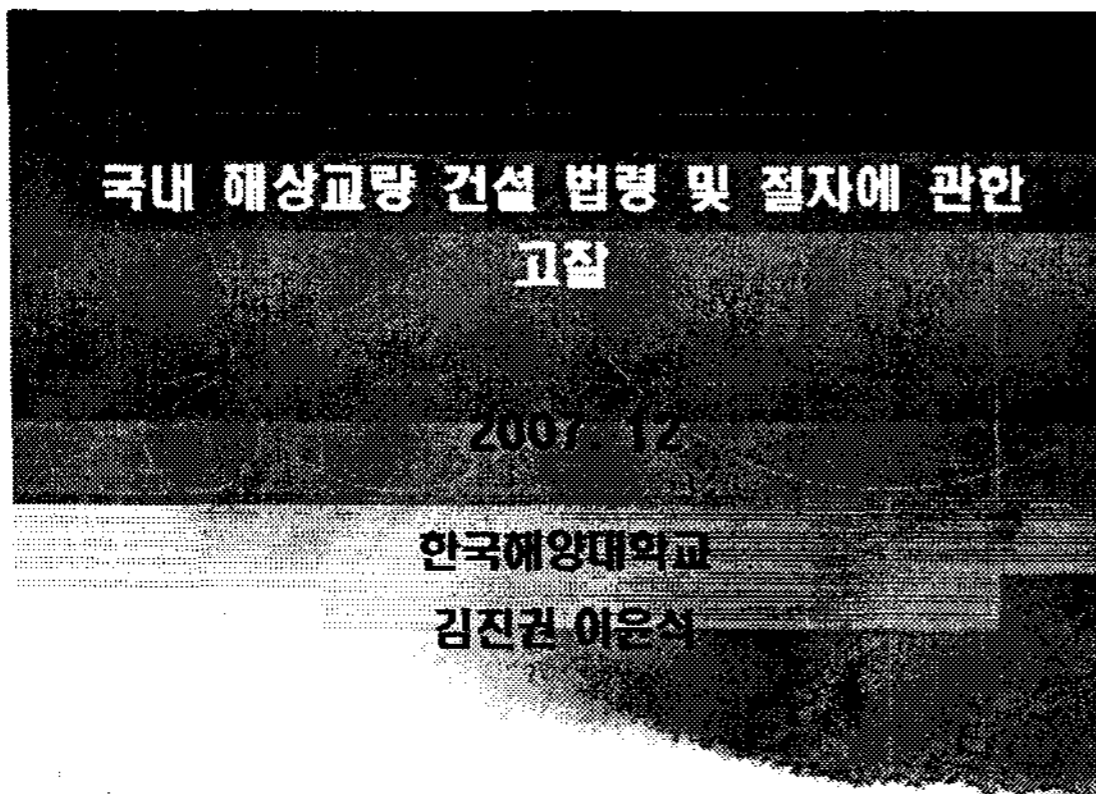
#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고찰

김진권\* · 이윤석\*\*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 교수

**요약** : 최근 우리나라 여러 주요 항만에 해상교량의 건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이들 교량의 설치 위치나 규모가 주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선박 통항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교량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Key words** : 해상교량, Bridge Permit, Bridge Administration, Navigation Clearance



\* 대표저자 : 김진권 jinkwon@hhu.ac.kr

\*\*교신저자 : 이윤석 lys@hhu.ac.kr

## 2. 해상교량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 해양수산부 관련 <양만법>

- 양만법은 양만의 지정·개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양만 건설을 촉진하고 양만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
- 제2조 제6항 「양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
  - 「양만시설」에 대한 정의 부분에 해상교량에 해당하는 임항교통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건교부 또는 지자체가 면자사업 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상교량에 대하여 「양만시설」로 지정 또는 고시하지 않을 경우 양만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함
  - 해상교량과 관련된 건설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11

## 2. 해상교량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 해양수산부 관련 <양만 및 어항 설계 기준>

- 목적: 양만시설물 및 어항시설물 또는 연안정비시설물의 계획에 관한 일반적 기준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며 양만분야에 관한 기술의 체계화와 통일화를 도모하고 양만기술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에 목적인.
- 해상교량 관련 항목: 양로목, 선외장, 방출공 등
- 양만 및 어항 설계 기준 총괄 검토:
  - 「양만시설」에 「임항교통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리청에서 지정·고시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관리청이 양만시설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법령을 적용하기가 곤란함.
  - 명시된 양로목, 선외장 등은 해상교량의 건설에 이용되는 개념과는 물리적으로 다른 개념임.
  - 양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명시된 수역시설의 양로목을 해상교량의 설계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개념이 상이하며, 양하고는 필요 높이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해상 선박에 대한 기준 없음

12

## 2. 해상교량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 해양수산부 관련 <양만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 목적: 이 규칙은 양만법 제26조의 규정과 양만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하에 인연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목적으로 함.
- 해상교량 관련 항목: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수역시설], 제4조[양로], 제12조 [임항교통신설]
- 양만시설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의 총괄 검토:
  - 제2조에 의하면 기술 기준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양만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상교량의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
  - 양만시설의 기술 수준의 일반 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해상교량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12조 임항교통신설에 교량 시설물의 이용 주체를 해상이용자인 선박이 아닌 지방을 위한 안전한 구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13

## 2. 해상교량과 관련된 각종법령분석

### ◆ 민자투자사업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목적: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해상교량 관련 항목: 제2조(정의)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투자법의 총괄 검토:
  -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 양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양만시설도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해상교량도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됨.
  - 도로법 및 양만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이들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 추진 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는 해상교량 관련 절차 분석에서 언급함.

16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해상교량 건설 형태 분석
- 라.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선정 원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 선정 원칙의 일반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 ① 수익자 부담능력원칙
  - ② 수익성원칙
  - ③ 사업편익의 원칙
  - ④ 효율성 원칙

20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추진 절차 분석
- 가. 정부고시사업
  - 1) 정부고시 사업의 요건
  - 2) 정부고시 사업의 절차
    - ①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②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③ 정부고시사업의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
- 나. 민간재원사업
  - 1) 민간재원사업의 요건
  - 2) 민간재원사업의 절차

21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해상교량 건설 형태 분석
- 가.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

소유/운영 분류		해상교량 운영 주체	
		정부	민간
해상교량 소유 주체	정부	국영화	민자화
	민간	관영화	민영화

17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해상교량 건설 형태 분석
- 나. 자본 투자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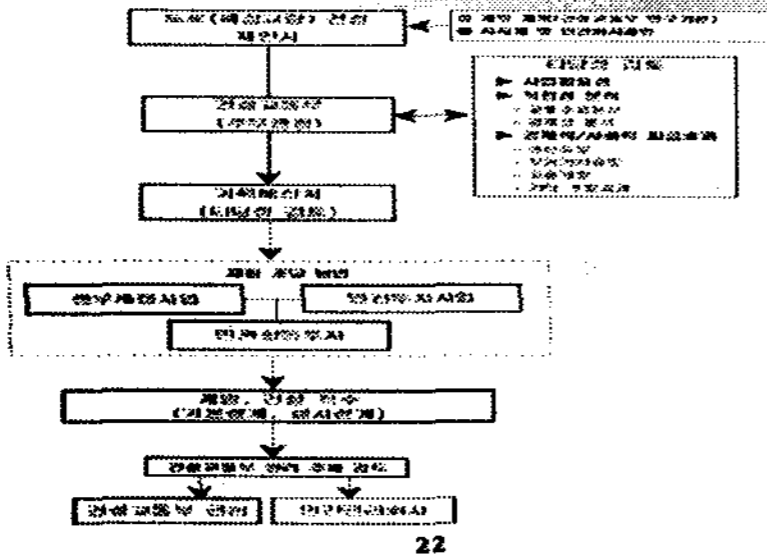
분류	건설 및 운영 주체
총부채정사업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총부 건설 및 운영)
원천민간자본방식	투자 및 운영 민간 자본 참여 - 민간의 소유권 인정(권선 민영화) - 일정기간 후 소유권 정부 귀속(BTOT 방식) 운영 민간자본 참여 - 투자에 대한 민간 자본 참여율이 30% 이상 - 민간위탁, 장기임대차, 계약운영
	책임투자방식
공기업 민간자본참여 방식	정부가 공기업 설립(민간 주주에게 참여)

18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해상교량 관련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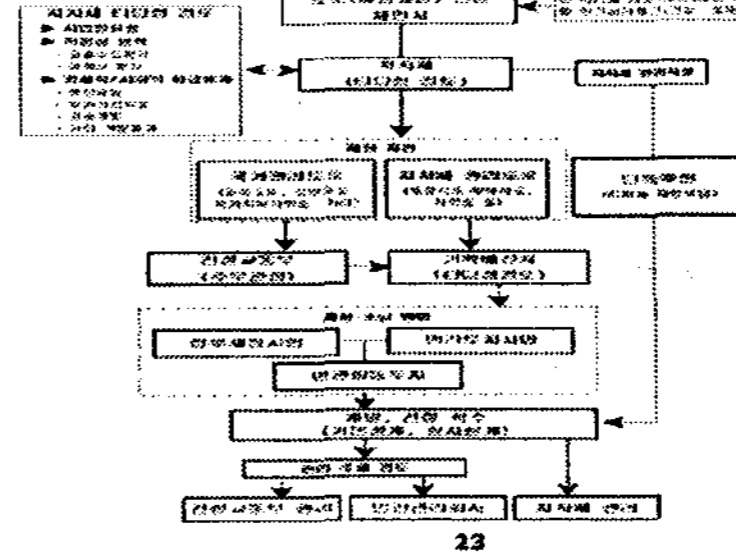


22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해상교량 관련 절차



23

### 3. 해상교량 건설관련절차에 관한 분석

#### ◆ 해상교량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의 일반 절차

-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 사례 분석 및 문제점

- 가. 광양대교정부채정사업
  - 1) 주요 추진 일정
  - 2) 광양대교 주요 추진 절차 분석
  - 3)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분석
  - 4) 시행사업자의 제안(유신코퍼레이션 및 개신사업)
- 나. 인천 제2연륙교(민간투자사업)
  - 1) 인천대교 건설 전체 추진 경과
  - 2) 해상교량 계약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 결론
- 다. 울산대교(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
  - 1) 울산대교 건설 전체 추진 경과
  - 2) 울산대교 관련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분석
  - 3) 울산대교 관련 시장 또는 절차상의 문제점

24

### 4. 교역

#### ◆ 해상교량 건설 관련 국내법 개선 방향

-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 해상교량 건설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법령에 두는 것이 타당함
  - 해상교량 건설과 관련된 타 기관 관할 범위에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음
  - 해상교통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해양안전관리법" 상에 근거 규정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 국내 해상교량 건설시해 제기되었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 진행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요건을 두는 것이 타당함 것임
  - 세부관련사항, 즉 해상교량 건설 관련 기준 등은 관련 고시로 두는 것이 좋을 것임

25